

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안(2020.03.23)

조항	기존	변경안	비고
제2조 용어의 정의	⑪ "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"(이하 '통합관리시스템'이라 한다)이란 납부자의 자동이체신청서(출금이체 동의서) 사본을 보관하고 납부자가 자동이체 동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공동의 시스템을 말한다.	⑪ "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"(이하 ' 페이인포 '라 한다)이란 납부자의 자동이체신청서(출금이체 동의서) 사본을 보관하고 납부자가 자동이체 동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공동의 시스템을 말한다.	용어의 변경 (통합관리시스템 → 페이인포)
제 4 조 CMS이용거래의 범위		⑦ 계좌조회서비스 : 납부자의 계좌 유효성을 조회하는 서비스 ⑧ 현금영수증발급대행서비스 : 사용자가 발행해야하는 현금영수증 자료를 접수받아 국세청에 전송하는 서비스	부가서비스 추가
제7조 이용요금	⑥회사는 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이용요금에 대하여 사용료는 납부 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, 결제수수료는 해당월 말일에 사전 등록된 이용자의 E-mail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한다. 단, 결제수수료를 사용료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동일하게 발부한다.	⑥회사는 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이용요금에 대하여 의월초에 사전 등록된 이용자의 E-mail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한다.	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의 변경
제10조 거래지시의 철회	④납부자의 사망·한정지산신고·금지산신고나 이용자 또는 회사의 해산·합병·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권리·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	④납부자의 사망· 한정후견개시·성년후견개시 나 이용자 또는 회사의 해산·합병·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권리·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	민법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변경
제18조 자동이체 동의서 접수	⑦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징구한 자동이체신청서의 허위작성, 허위정보제공, 본인확인소홀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	⑦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징구한 자동이체신청서의 허위작성, 허위정보제공, 본인확인소홀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모든 책임을 진다.	맞춤법 수정
제 20 조 자동이체 서비스의 처리	8. 이용자는 CMS이용거래를 위하여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(이하 '통합관리시스템'이라 한다)에 납부자의 자동이체신청서(또는 제 18조 2항에 규정한 자동이체 동의근거)를 등록하여야 하며, 이용자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. 단 회사는 이용자가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한다.	8. 이용자는 CMS이용거래를 위하여 페이인포 에 납부자의 자동이체신청서(또는 제 18조 2항에 규정한 자동이체 동의근거)를 등록하여야 하며, 이용자는 페이인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. 단 회사는 이용자가 페이인포 에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한다.	용어의 변경 (통합관리시스템 → 페이인포)